



“5·18은 북한이 주도했다”, 내용은 허위이나 피해자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 안 돼

예배 설교 중 “5·18 민주화 운동은 북한 특수부대가 주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5·18 민주화 유공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던 A 목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지난 5월 15일, 5·18 민주화 유공자들이 서울 강남구 모 교회 목사의 설교 중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목사는 2008년 9월 예배 설교를 통해 “광주 5·18 사건에 북한 특수부대가 투입돼 계엄군과 민간인으로 위장한 뒤 만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소송을 당했으며, 1심 재판부는 “피고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을 지목하는 표현은 없어 원고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5·18은 이미 법적, 역사적으로 평가가 확립되었다”며, A 목사의 설교로 5·18 피해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구성원 수가 적거나 주위 정황 등에 비취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때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사건 ‘조기조정제도’ 본격 시행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5월 1일부터 민사사건에 대한 ‘조기조정제도’를 도입,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조기조정제도는 법원이 소장을 접수 받아 재판부에 배당한 뒤 원고, 피고의 법정 소환이 시작되기 전 약 2개월 동안 조정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제도로, 조정담당 판사가 법원 조정센터와 조정위원회, 분쟁종합지원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외부 중재기관으로 사건을 넘겨 조정을 시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은 140여 명의 변호사를 조정위원으로 확보해 둔 상태다. 조정위원들은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조

정위원의 사무실에서 대면회의를 통해 당사자들이 굳이 조정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일 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조기조정제도의 도입과 관련 “법원에 접수되는 민사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으로 분쟁을 조기 해결할 수 있게 돼, 재판부의 사건 부담을 줄이고, 소송 당사자는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며 “2개월 가량의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전국법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래 ‘눈물’ 발표한 인터넷 가수 차쿰,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교제하던 남녀 청소년이 임신한 아이를 책임질 수 없어 자살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래 ‘눈물’을 발표한 가수 차쿰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는 지난 5월 16일 “피고인은 곡의 느낌

을 잘 전달하기 위해 청주에서 발생한 남녀 학생 자살 투신 사건을 보도한 방송 내용 중 여자 앵커의 말소리만 노래 전반부에 삽입해 노래를 만들었으나, 자살한 소년은 여자친구의 임신으로 자살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소인의 남동생이 여자친구의 임신으로 인해 투신 자살했다는 내용의 노래 ‘눈물’의 음원 파일과 일을 게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차륜은 지난해 1월 남녀 청소년이 교제 중 아이를 가졌으나, 아이를 책임질 수 없어 자살을 택한다는 내용의 가사로 ‘눈물’을 제작했다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읽는 사람이 구체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댓글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 물을 수 없어

댓글 내용이 일반독자들이 봤을 때 구체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합소6부는 지난 3월 7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영화비평 칼럼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제작사 PD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댓글이 표현 방식에 있어 거칠기는 하지만, 영화 비평글을 쓴 칼럼니스트에 대한 내용이기 보다는 비평글의 거친 표현과 어투에 대한 이의 제기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을 표현하고 있으며, 일반 독자들이 댓글을 읽을 때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취 볼 때 댓글 내용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칼럼니스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고, 댓글의 내용, 표현 방식, 어투, 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 배경 등에 비취볼 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모욕죄도 인정하지 않았다.

정 씨는 지난해 1월 한 의학사이트의 영화칼럼에 게재된 ‘집단 환불을 요구할 영화’라는 제목의 칼럼에 대해 “기자는 맞나? 요즘 기사 클릭 수대로 돈 받는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서 ... 나쁜 영화 없어져야 하지만 이렇게 막말로 돈 버는 사람들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정리해고 부당성 비판 현수막, 명예훼손 아니다

정리해고를 비판하는 현수막의 내용이 해고의 부당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1부는 회사 건물 앞에 정리해고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열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보험사 해고복직투쟁위원장 김 모 씨 등 6명에 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수막을 내건 주된 목적은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데 있다기보다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복직을 요구하는 데 있다”며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공의 이익은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

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며 “행위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회적 동기나 목적이 포함됐더라도 위법성 조각의 예외로 볼 수 없다”고 설시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 9월 회사 앞에 ‘흑자 나는 회사에서 정리해고!’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열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후 1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지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1심 재판부는 ‘사업의 성격상 대외적인 이미지가 중요한 보험회사에 피해를 입힐 의도가 엿보이며, 김 씨 등이 현수막에 적시한 내용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 1인당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국가에 의해 희생자로 결정된 제주 4·3사건 관련자를 '폭도'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

제주지법 제2민사부는 지난 4월 8일, 전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회장 등 유족 97명이 이 모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심도 있게 결정하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자신의 일방적 주장만을 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희생자들에게는 각 30만 원, 유족에게는 각 2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은 이 목사가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연회에서 “제주 4·3 사건 희생자는 폭도이며, 4·3 평화공원은 폭도공원”이라고 표현한 것과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는 가짜이고 보

고서를 이렇게 작성한 이유는 4·3 폭동에 가담한 사형수와 무기수 606명과 폭도들을 희생자로, 진압 경찰과 국군을 학살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4·3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고,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 목사의 주장에 대해 “사적기관이 아닌 특별법에 근거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이 이뤄졌고, 장기간의 조사와 심사를 걸쳐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뚜렷한 증거의 제시 없이 폭동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것까지 위법성 조각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외동향

[일본동향] 한동원 전 언론연구원장

휴대전화 사이트의 유해정보 규제 도쿄도 의회, 청소년조례개정안 심의

일본에서는 휴대전화 사이트의 유해정보로부터 18세 미만 미성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도쿄도 의회는 지난 3월 19일 휴대전화 사이트의 유해정보를 18세 미만 미성년들이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필터링(フィルタリング·filtering)의 강화와 어린이의 성묘사를 포함한 만화나 애니메이션(アニメ·animation)의 규제를 새로 포함한 시킨 청소년건전육성조례 개정안을 6월 정례회의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신문협회보(2010년 3월 30일 자)에 의하면,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이 휴대전화의 필터링을 해제할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네트 접속업자에게 제출할 것을 보호자에게

의무화시키는 한편 유해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겠다는 각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복장, 소지품, 목소리 등에서 18세 미만이라고 인식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등장인물을 ‘비실재(非實在)청소년’으로 정의하고, 비실재청소년의 ‘성교 또는 성교 유사행위’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만화 등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하거나 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 관련단체와 출판업계 등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비실재청소년’의 정의가 애매하다”는 등 반대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 “의료사고 연재 보도, 서적으로 출판하려면 추가취재 필요”

신문에 연재된 의료사고 보도를 서적으로 출판하려면 보도 후 출판시점까지의 사이에 발표된 사고원인 등을 지적한 별도의 외부보고서 등을 추가로 취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판결했다.

일본 신문협회보(2010년 2월 23일 자)에 의하면, 마이니치(毎日)신문 의료문제 취재반은 지난 2001년 도쿄여자의대에 서 발생한 의료사고를 인공심폐장치의 조작ミス라고 신문에 연재한 후 2003년에 기사를 정리하여 서적으로 출판했는데, 이에 대해 사건 당시의 담당의사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집필 기자 5명과 서적을 출판한 集英社를 상대로 200만 엔의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지난 2월 16일 상고심 공판에서 기자와 集英社の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는 한편 80만 엔의 지불을 명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심장수술 후에 여아가 사망한 사고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피소된 당시의 담당의사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도쿄고법은 항소심에서 신문에 연재한 후 서적이 출판될 때까지의 사이에 사고원인을 지적한 별도의 외부보고서가 발표되었으므로, 서적으로 출판하려면 추가취재가 필요했으며 서적의 기술(記述)에도 진실 상당성이 없다고 지적,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국회 난투장면 보도 어린이에 유해” 대만 국가통신방송위, 방송사에 벌금

미디어 등을 감독하는 대만의 국가통신방송위원회(NCC)는 지난 3월 25일 입법원(국회)의 난투(亂鬪)장면을 방송한 민간방송 2개사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영상을 장시간 방송했다”는 이유로 30만 대만달러(약 1,000만 원)의 벌금을 명했다.

일본 신문협회보(2010년 4월 13일 자)에 의하면, 입법원은 지난 1월 18일 지방제도에 관한 법안심의를 둘러싸고 찬성과 인 국민당(여당)과 반대파인 민진당(야당)의 의원들이 격렬하게 대립, 의사당 내에서 수십명의 의원들이 난투를 벌였으며, 각 민간방송사들은 이 장면을 뉴스프로그램에서 일제히

방영했다.

이에 대해 NCC는 지난 4월 24일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폭력장면을 시간대도 고려하지 않고 3분 이상이나 방송했다”고 지적, 「아동·청소년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과거의 위반실적도 반영하여 2개 방송사에 벌금을 명하는 한편 다른 10개 방송사에 대해서도 경고처분을 내렸다.

NCC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보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절도(節度)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송사 측은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독자에 대한 손해 예견 곤란, 신문사에 광고 게재 책임없다

“광고를 본 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견(豫見)하는 일은 곤란하므로 광고를 게재한 신문사 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 신문협회보(2010년 2월 23일 자)에 의하면, 일본 도쿄지법은 지난 2월 17일 2005년 경영파탄을 일으킨 통신사업자 ‘平成電電’(헤이세이덴덴)을 둘러싼 투자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동사의 출자모집광고를 게재한 신문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출자자 436명이 朝日(아사히), 讀賣東京(요미우리도쿄), 西部(세이부), 日經(닛케이) 등 각 신문사를 상대로 합계 26억5,000만 엔

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平成電電의 광고원고는 제3자 기관인 신문광고심사협회의 심사를 거쳤고, 사업이나 계약의 내용에도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었으므로 신문사측에 책임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항소했다.

피소된 신문사 각사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에 걸쳐 平成電電의 관련회사가 출고(出稿)한 출자모집광고를 게재했으며, 원고 측은 “언론사들은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平成電電의 사업계획, 업적 등을 조사하여 고액배당을 부르짓는 광고의 진실성을 확인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정부 총무상의 NHK에 대한 방송요청, ‘알 권리’ 침해 아니다

일본 정부의 총무상(總務相·총무부장관)이 NHK 국제방송에 필요한 사항의 방송을 요청한 것은 “‘알 권리’의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본 신문협회보(2010년 4월 13일 자)에 의하면, 일본 오사카지법은 지난 3월 26일 NHK에 대한 총무상의 요청에 대해 오사카 시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낸 방송요청 금지청구소송에서 “원고 적격(適格)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총무상이 방송을 요청한 데 대해 “표현의 자유에 반

하는 헌법위반, 알 권리와 NHK의 보도자유 침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는 국민이 동등하게 향유하는 일반적인 권리이며, 방송법은 개인의 개별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는 없다”고 판시했다.

방송법 제33조 제1항은 총무상이 NHK에 대해 방송사항 등의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여 국제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상 개인의 표현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언론보도와 같은 기준 적용

일본 최고재판소는 “인터넷상의 정보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여 그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는 때로 심각할 수 있으며, 한번 손상된 명예는 인터넷상의 반론에 의해 충분히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에게 벌금 30만 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2심인 도쿄고법은 인터넷상 개인의 표현행위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보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1심의 무죄판단을 물리치고 30만 엔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일본 신문협회보(2010년 4월 13일 자)에 의하면,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지난 3월 1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라면 체인점 경영회사를 ‘컬트(カルト·cult)집단’ 등으로 중상하여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한 회사원(38)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을 확정하면서 “인터넷상에 게재된 것이라고 해서 열람자가 신뢰성이 낮은 정보로 받아들인다고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언론보도와 마찬가지로 확실한 자료나 근거에 비추어 보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상업등기부등본이나 가맹점의 점장이었던 인물로부터의 메일 등 자료에 근거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①일반적인 입장에서 작성된 자료가 있었고 ②자료에 대한 이해가 부정확했고 ③경영회사의 관계자에 대해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08년 2월 1심재판소인 도쿄지법은, 개인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발신한 정보의 신뢰성은 낮다고 전제한 뒤 인터넷상 개인의 표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①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 발신하고 ②인터넷의 개인이용자에 대해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시킬 만한 조사를 하지 않고 진실 확인 없이 발신한 경우라야 비로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반론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미국동향]

뉴저지주 대법원, 소송기록을 토대로 보도한 기자에게 ‘공정보도 특권’ 인정여부 관심

명예훼손적 내용을 전파한 자는 그 내용의 진위에 대해 아무런 입장표명을 한 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른바 ‘전파자 책임의 법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판례는 ‘공정보도 특권’(fair report privilege)을 인정하고 있다. 공정보도 특권은 “공적 직무상의 행위나 절차 또는 공적 관심사를 다루는 공개된 모임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항의 공표는 그 보도가 정확하고 완전하다거나 또는 보도된 행사의 공정한 요약인 경우에는 면책된다”는 법리를 의미한다.

The News Media & The Law(2010 겨울호)에 게재된 한 기사에 의하면, 최근 미국 뉴저지 주에서는 소송기록을 토대로 한 보도에 ‘공정보도 특권’을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1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특권을 인정한 반면 항소심 법원은 특권의 적용을 배척해 상반된 판단이 내려졌다.

Hackensack에 위치한 The Record 지는 Salzano 대 North Jersey Media Group 사건에서 NorVergence 통신회사의 파산수탁인이 “NorVergence 사 간부의 아들인 Thomas John Salzano가 50만 달러에 해당하는 공금을 유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50만 달러 횡령하여 흥청망청 유희 혐의’라는 제목으로 신문사의 온라인 홈페이지와 The Glen Ridge Voice라는 지역지에도 실렸다. 그 내용은 “Salzano가 약 50만 달러에 달하는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술을 마시고, 클럽에 드나들고, Glen Ridge에 침실 5개짜리 집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 관련 내용은 파산 관련 소송기록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1심법원은 ‘공정보도 특권’을 들어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뉴저지 주 고등법원은 그동안 공식적인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보도에 ‘공정보도 특권’이 인정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나, 이는 법원의 판결이나 사법처리가 있는 이후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단순히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소송의 내용이나 또는 공판 이전의 소송기록을 인용할 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009년 1월, 뉴저지 주 대법원은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기 전까지 항소심 판결의 효력을 중지시켰고, 이에 따라 언론사에 유리했던 이전의 판결이 유효한 상태다. 2009년 10월 해당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이 있었으나 주 대법원은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The Record 지를 소유한 North Jersey Media Group의 변호인 Bruce Rosen은 고등법원의 판결과 같이 ‘공정보도 특권’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곳이 미국 내에서는 거의 없으며, 이는 미디어의 취재 범위를 쉽사리 제한하지 않으려 하는 법원의 경향 때문이라고 밝혔다.

Rosen은 ‘공정보도 특권’이 사법처리결과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르면, 소송이 제기되고 몇 년간 계속되다가 법원이 마침내 결론을 낼 때까지 언론이 전혀 다루지 말아야하는 것인지 되물었다.

다른 주에서는 ‘공정보도 특권’을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 1월 7일 Howell 대 The Enterprise Publishing Company 사건에서 매사추세츠 대법원은 해고된 하수처리원에 대한 신상을 담은 Brockton신문의 보도가 비록 익명의 취재원으로부터 취재한 것이기는 하나 공식적인 정부의 결정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이므로 ‘공정보도 특권’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Salzano 사건에서 언론사가 주 대법원에 상고할 당시 뉴저지 언론협회가 제출한 의견서에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들의 모임’ 등 19개 기관이 지지를 표명했다. 해당 의견서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공정보도특권을 제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혼란을 야기하여 어떤 경우에 이 특권이 인정되는지 기자들이 알 수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이뤄지도록 판결을 내려달라고 뉴저지 대법원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델 살해사건은 보도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모델의 모델의 20년 전 누드사진을 게시한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해당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은 미국에서 일찍부터 발달하였고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은 표현의 자유라는 공공의 이익에 의해 제한을 받으므로 어떤 사람의 표상(表象)을 정보와 사상의 전달을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되지 않는다.

The News Media & The Law(2010 겨울호)에 게재된 한 기사에 의하면, 최근 미국에서는 Hustler 잡지사가 여성모델인 Nancy가 남편에 의해 살해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그녀의 20년 전 누드사진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Nancy의 어머니인 Maureen Toffoloni는 상업적 광고의 목적으로 딸의 초상을 사용하여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Hustler 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Hustler 지는 Nancy의 누드사진이 충분히 보도의 가치가 있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10년 3월 1일 대법원은 상고신청을 기각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언론사의 변호를 맡은 S. Derek Bauer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놀랍고, 전례 없는” 판결이라며 “수정헌법 1조에 사법이 도덕의 잣대를 들이댄 꼴”이라고 평가했다.

Toffoloni는 조지아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언론사의 요청으로 연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연방지방법원은 Benoit의 죽음이 “공적인 관심사”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개인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퍼블리시티권이 있기는 하나, 보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해당 기사와 사진이 순수하게 상업적인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보도의 가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수정헌법 1조와 조지아 주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 등 일부 법원에서는 광고의 목적이 아닌 뉴스보도로 다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일단 보도가치가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연방고등법원 재판부에서는 해당 사진이 20년 이상 지났으므로 이번 사건과의 시기적 적절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Toffoloni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이성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원고의 권리와 수정헌법

제1조의 출판의 자유를 조화시켜야 한다고 실시했다.

언론사 측 대리인인 Bauer는 “Hustler 사의 보도가 선정적이고 무분별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Hustler 지는 수정헌법 1조의 법철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항상 찬밥신세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그런 입장을 견지한다면, “기사에 실린 특정 사진의 적절성 여부를 판사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다.

애틀랜타 고등법원의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연예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마이클 잭슨이나 파라 포셋처럼 사망한 유명인에 대해 다루거나 어린 시절의 사진을 게재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고등법원처럼 보도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시간적인 제약이 없다면, 그러한 경우에서도 유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Hustler 사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수정헌법 제1조의 보도가치의 개념을 더 넓게 해석해야 하며, 이전의 다른 사건에서도 기사의 보도가치를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일례로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은 Hoffman 대 Capital Cities 사건에서 기사가(해당 사건에서는 영화 Tootsie의 더 스티브호프만 캐릭터를 묘사한 사진을 이용했음) “독자의 관심을 끌기” 잡지를 판매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하더라도 수정헌법 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벗어난 정도의 상업적 사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할리우드 및 유명인사들을 이용하여 잡지를 팔아보려는 의도가 있었음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패션기사가 순수하게 ‘상업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언론자유와 전문언론인사회를 위한 기자협회(The 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Society for Professional Journalists)는 Hustler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수정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만일 그러한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동안 미국법상 인정되지 않았던 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퍼블리시티권 논쟁으로 번져 뉴스 보도 기능을 위축시키는 등 불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밖에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판결은 기사가 순수한 상업적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보도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수정헌법 1조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다른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 통신원 보고

주재원 통신원, 런던정경대학(LSE) 언론학 박사과정

축구선수 존 테리의 섹스 스캔들에 대한 법원의 보도 금지명령(super-injunction), 표현의 자유 침해논란 불러일으켜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의 주장이자,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첼시의 축구선수 존 테리(John Terry)의 섹스 스캔들은 단순히 유명인사의 사생활 노출에 그치지 않고, 영국의 사생활 보호법과 명예훼손법 등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법 적용을 놓고 사회적 논의로 확산되었다. 소위 super-injunction이라고 불리는 법원의 언론보도금지 및 판결 발표 비밀 유지에 관련된 법규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훼손하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영국 정부는 사생활 보호법 및 명예훼손 관련법,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 등 언론 관련 법조항을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유명 축구선수인 존 테리는 자신의 소속팀 동료였던 웨인 브리지(Wayne Bridge)의 전 애인인 바네사 페론셀(Vanessa Peroncell)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언론을 통해 폭로될 것을 우려하여, 법원에 super-injunction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한동안 공개되지 않은 스캔들로 남았다. super-injunction은 특정 사안에 대해 언론의 보도를 미리 차단하는 동시에 이러한 차단을 명령하는 법원의 결정 역시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이중 보호장치로 사생활 보호의 목적으로 영국 법원에서 내리는 결정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경우 명예훼손 소송 당사자가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감수하지만, 개인이나 단체가 super-injunction을 얻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super-injunction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있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super-injunction이 영국 공론장의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2009년 11월에 발생한 다국적 무역회사 '트라피구라(Trafigura)'가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에 대해 super-injunction을 법원에 신청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트라피구라는 2006년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한 하청업체에 저급 휘발유 처리에서 생성된 폐기물 처리를 맡겼는데, 해당 업체가 코트

디부아르 최대 도시인 아비장 주변에 400여 톤이나 되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해 지역 주민 8명이 숨지고 85,000여 명이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트라피구라는 코트디부아르 정부에 2억 2,500만 불의 배상금을 지불하였고, 집단 소송을 제기한 피해 주민 3만명에게 1인당 1,500불을 배상하기로 합의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당시 트라피구라가 폐기물 무단 투기의 피해 효과를 예상한 보고서가 사전에 제작되었다는 사실이 퍼지면서, 이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를 심층 취재하던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해당 보고서가 유입된 것을 파악한 트라피구라는 영국 법원에 해당 보고서와 관련해서 super-injunction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보도 금지 명령을 내린지 사흘만에 문제의 보고서가 내부고발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wikileaks)'를 통해 공개되면서, 해당 사건뿐 아니라 언론 보도의 자유를 제한하는 super-injunction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론화되었다.

그러던 중 2010년 1월에 유명 축구선수인 존 테리의 super-injunction 사례가 또다시 터지면서 영국의회와 정부는 관련법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2010년 1월 20일에 존 테리와 그의 변호사는 '뉴스오브더월드(News of the World)'에 의해 조만간 존 테리의 여자 문제와 관련된 기사가 공개될 것을 간파하고 법원에 해당 건에 대한 보도금지 처분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1월 22일에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그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도 보도를 금지하는 이른바 super-injunction을 명령했다. 그러나 약 일주일 후인 1월 29일에 가디언지의 강력한 항의를 받아들인 고등법원의 Tugendhat 판사가 super-injunction을 해제함으로써 다음날인 1월 30일, 존 테리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사는 영국 대부분의 신문에 보도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관련 기사가 보도되면서, super-injunction을 해제한 Tugendhat 판사의 논평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애초 존

테리는 언론보도 금지 요청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에 대해 그의 아내가 자신의 스캔들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이를 알게 될 경우 부부 관계에 파경을 맞이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담당판사는 논평을 통해 “존 테리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도금지 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애초에 의심의 여지가 있었다. 그보다는 유명 축구 선수로서의 그가 섹스 스캔들에 휘말릴 시 스폰서십의 손실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 솔

직한 심정이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가디언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super-injunction 사례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지는 관련 기사를 통해 대부분의 장관들이 판결공개 원칙의 영향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록 장관들은 환영하지 않겠지만, 존 테리 스캔들에 대한 영국국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super-injunction이 새 내각의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PCC 2009년 한 해 1,134건의 조사·처리건수 기록 예년보다 활동 더욱 활발해져

영국의 PCC(Press Complaint Commissions)가 2009년 한 해 동안의 업무성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9년 한 해 동안 PCC가 사건으로 접수, 조사·처리(조정)한 건수는 총 1,134건으로 2008년의 949건에 비해 185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PCC가 공중에게 언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유용한 광장(forum)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738건이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8년의 678건에 비해 60여 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609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요청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해당 언론사가 이를 수용하였고, 이 중 541건에서는 중재 요청

자가 정정보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언론보도에 대해 가장 많은 불만신청이 제기된 것은 Daily Mail의 칼럼니스트 Jon Moir가 유명 가수이자 동성애자였던 Stephen Gately의 죽음에 관해 작성한 기사로 영국 전역에서 25,000여 건이 넘었다. 그 다음으로는, 총 10개의 신문에 실린 14건의 BNP(British National Party) 관련 신문 기사에 대해 제기된 총 5,971건의 불만신청이다. PCC에 접수된 사례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은 기사에 대해 정정 및 반론을 요청한 것으로 전체의 87.53%였다. 그 다음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기사로 21.41%를 차지하였다.

영국의회, ‘명예훼손 소송관광’에 대한 대책 마련 고심

최근 몇 년 사이에 영국으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세계각지에서 몰려드는 이른바 ‘명예훼손 소송관광’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보급에 따른 언론의 세계화로 인해, 자국의 언론보도나 인터넷의 게시물 등을 통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런던까지 와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아이슬란드의 한 대학교수가 대학 웹사이트에 올린 글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런던에서 소송을 제기한 아이슬란드 사업가의 경우, 런던에서 소송을 내 피고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영국 영사관의 서류발급에 문제가 발견되어 영국 외무성이 피고 측에 수

십만 파운드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당시 잭 스트로우 영국 법무장관은 최근 외국인들의 ‘명예훼손 관광’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음을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의회에 보고되자 상원에서는 외국인들이 영국에서 소송을 하려면 영국에서 실제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게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의 사법위원회에서도 현재의 명예훼손법은 불공정하고, 극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언론의 자유를 경멸하는 것이라는 다수의 사례를 모아 조만간 명예훼손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법원, 법원은 과학적 논쟁의 시비를 판단하기에 적합한 곳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저명한 과학자이자 전문 칼럼기고자인 사이먼 싱(Simon Singh) 박사는 영국 척추교정지압협회(British Chiropractic Association, BCA)와의 2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배상의 의무가 없음을 인정받았다. 싱 박사는 지난 2008년 4월,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에 특정 유년기 시절에 척추교정 치료가 필요하다는 일부 척추교정지압사들의 요구에 반론을 제기하는 칼럼을 게재하면서 BCA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다. 해당 칼럼에서 싱 박사는 복통이나 천식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 척추교정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일부 척추교정지압사들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BCA의 임원진과 척추교정법을 지지하는 모임에서 싱 박사를 법원에 고소하였다. 해당 사례는 과학 커뮤니티 내에서의 명예훼손이 발전적인 과학적 토론을 방해하며, 그로 인해 과학자들의 학술적 의지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2009년 5월에 있었던 1심법원인 High Court의 판결에서 법원은 싱 박사의 칼럼이 BCA를 암묵적으로 사기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싱 박사측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근거한 객관적인 의견 표시’라는 점을 들어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항소법원은 2010년 4월에 이를 의견 표현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싱 박사의 승소를 결정하였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싱 박사의 칼럼이 원고측인 BCA의 입장과 상반되는 의견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BCA가 주장한 일부 사안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BCA를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집단으로 매도할 목적이 있었다고 간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싱 박사는 항소심 판결 뒤 가진 인터뷰에서 “시끌벅적해야 할 과학적 논의의 장이 불확실한 명예훼손법으로 인해 위축은 듯 조용하며, 이는 향후 영국과학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명예훼손법 적용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이번 판결이 훌륭하기는 했지만, 지난 2년간 법적 공방으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향후 BCA가 영국 최고 법원(Supreme court)에 항소한다면, 또다시 2년간의 시간을 무의미한 투쟁에 소모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자신의 글에서 문제가 되었던 몇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기 위해 20만 파운드(한화 약 4억원)나 지불해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역설하였다. 실제로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만 이와 유사한 명예훼손 사건이 수백여 건에 이르렀지만, 대부분은 사과문을 게재하고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것으로 법정공방을 대신했다. 이는 언론에 기고하는 과학자나 의학자들이 그들의 시간과 열정 그리고 엄청난 액수의 돈을 법정공방에 쏟아 붓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2010년 조지 오웰상(The Orwell Prize)을 수상한 유명한 작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알렌 그린(Allen Green)은 “그의 승리는 분명 낙관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러나 그에 있어서는 너무나 복잡하고 낙심되며, 불쾌하게 비싼 여행이었을 것이다. 이번 판결은 영국의 명예훼손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현행 명예훼손법이 얼마나 최악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충격적인 사례이다”라는 의견을 그의 블로그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 판결을 통해 영국에서의 명예훼손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과학이나 의학 관련 이슈들에 대해 자신의 지식에 근거하여 인터넷 블로그에 의견을 게재하거나 언론에 발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공정하고 사실일 경우,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법원은 과학적 혹은 의학적 논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며, 그러한 역할은 관련 학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고히 했다는 측면에서 향후 이와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BCA 측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최고 법원(Supreme Court)에 상고할 것을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